

보 건 복 지 부 시 정 요 구

제 목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지원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 합천군

내 용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일한 영유아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지원명단 대조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중복지원자 확인 시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창원시 등 10개 시·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영유아 48명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간의 중복지원 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금 5,812,470원을 중복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다.

[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지원 현황(2016. 10. 25. 기준)

(단위: 건, 원)

시/군	계		보육료		양육수당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8	5,812,470	30	2,902,470	18	2,910,000
창원시	11	1,184,050	10	1,084,050	1	100,000
진주시	13	1,603,240	5	353,240	8	1,250,000
김해시	3	301,640	2	101,640	1	200,000
밀양시	1	22,880	1	22,880	-	-
의령군	2	114,400	2	114,400	-	-
함안군	6	792,780	5	615,780	1	177,000
창녕군	2	306,000	-	-	2	306,000
고성군	1	200,000	-	-	1	200,000
거창군	5	610,480	5	610,480	-	-
합천군	4	677,000	-	-	4	677,000

조치할 사항 창원시장은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보육료 1,084,050원, 양육수당 100,00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장은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보육료 353,240원, 양육수당 1,250,00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장은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보육료 101,640원, 양육수당 200,00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장은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보육료 22,88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수는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보육료 114,40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수는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보육료 615,780원, 양육수당 177,00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수는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양육수당 306,00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는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양육수당 200,00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수는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보육료 610,48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수는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양육수당 677,00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